제308회 임시회
2012.04.17.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 교육의원 장병학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2년 4월 6일

○ 회부일자 : 2011년 4월 10일

## 3. 제안이유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 조치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의 실시,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나. 안전한 학교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함(안 제5조).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점검

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시설물 점검결과 구조상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교육감 및 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을 담은 교재를 마련하고,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아.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안전한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 조치계획 추진 등을 통하여 학교안전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 수립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위원회 설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연 2회 이상, 학교장은 연 4회 이상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동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립학교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학교 시설물의 세부안전기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관 계 법 령 발 췌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 ▢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별표 1] 고등학교

[별표 2] 방송통신고등학교

[별표 3] 중학교

[별표 4] 초등학교

[별표 5] 특수학교

[별표 6] 유치원